

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'97. 12. 12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'97. 11. 11

○ 회부일자 : '97. 11. 11

다. 상정일자 :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○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 ('97. 12. 12)

2. 제안설명 요지

(기획관리실장 : 김 동 기)

가. 제안이유

-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우리도에서 설치하여 청주의료원장에게 위탁운영중인 정신질환자 요양소를 새로이 제정되어 '96. 12. 30부터 시행중인 정신보건법에 맞게 충청북도 정신요양 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설치조례명 변경

- 충청북도 정신질환자 요양소 설치조례

⇒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 설치조례

○ 명칭변경

- 정신질환자 요양소 ⇒ 정신요양병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전문위원 : 김 태 인)

충청북도정신질환자 요양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'96. 12. 30일 제정되어 시행중인 정신보건법상 사용하는 용어와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○ 충청북도 정신질환자요양소 설치조례명을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 설치조례로

○ 조례중 정신질환자 요양소를 정신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4명, 찬성 4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-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- 신·구조문대비표